

제24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8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2190호

붙임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190호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제2항 중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공공단체”로 한다.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사무감사) ① 시장은 학교급식 공급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을 할 경우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학교급식 공급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12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재계약)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자에게 사무를 다시 위탁할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생략)</p> <p>② 시장은 필요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u>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u></p> <p>③·④ (생략)</p> <p><u><신설></u></p>	<p>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공공단체 등</u>-----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사무감사) ① 시장은 학교급식 공급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u>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제12조(사무감사) ① <u>시장은 학교급식 공급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u></p>

<신 설>

<신 설>

제12조 (생 략)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
구 등을 할 경우 수탁자에게 문
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학교
급식 공급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12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
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
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계약)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자에게 사
무를 다시 위탁할지 여부를 결
정할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과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
다.

제15조 (현행 제12조와 같음)